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851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6689	김위상의원	2024.12.19.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 회 회부
	2212047	김위상의원	2025. 8. 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5. 11. 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 회 회부
	2213784	김태선의원	2025.10.29.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3.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2216252	김태선의원	2026.1.22.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4. 7.)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서식지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 위협 요인임에도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넷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의 '유통' 조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발생 곤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23조의4).
-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 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으로 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조항 체계를 정비함(안 제14조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제7조의2제1항제5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식지”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원”을 “복원·보호”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주기”를 “주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

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관”을 각각 “양도·양수·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 각 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 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6.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7.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9.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10. 제6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11.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포획·채취등을 허가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1항제1호”를 “제1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제한”을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광고를”을 “광고·선전을”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대발생 곤충의 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
2.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3. 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4.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5호 중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포획·채취를”을 “포획·채취 등을”로 한다.

제57조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보관”을 “양도·양수·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중 “보관”을 “양도·양수·보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호 중 “제14조제1항 단서”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8조 본문을”을 “제18조를”로, “광고를”을 “광고·선전을”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가중처벌)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폐사하거나 고사한 경우에는 폐사 또는 고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
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
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
우

6. ~ 14. (생 략)

② (생 략)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
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
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
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
· 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
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증장
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
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
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
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보호 및 피
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③ -----

-----복원·보호

-----.

④ (생 략)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 1항 및 제2항-----

-----.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

-----양도·양수·보관-----

-----양도·양수·보관-----

포함한다)· 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삭제>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삭 제>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삭 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삭 제>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삭 제>

·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
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
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
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
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야 한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
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
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
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

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가공·양도·양수·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지 및 제11호-----

-----.

1.·2.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포획·채취등을 허가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⑤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

-----제14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

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생 략)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
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
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
제2항제1호-----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등의 제한) -----

-----광고·선전을-----
-----. <단서 삭제>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
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대발생 곤충의 효과적인 방제
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
구축

2. 긴급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3. 국민 행동요령의 안내 및 관
련 정보 제공

4. 친환경적 방제 방법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 대발생 곤충의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조사 및 관리를 위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피
해 현황을 파악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제
·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방제 ·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을 포획한 경우
6. ~ 10. (생략)
- ② (생략)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
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
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

6. ~ 10.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
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
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 15. (생 략)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2. (생 략)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
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가공
· 유통 · 보관 · 수출 · 수입 ·
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
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 채
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
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
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
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 14. (생 략)

② (생 략)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5. ~ 15.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양도 · 양수 · 보관-----

4. 제14조제4항-----

5.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벌칙) ① -----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 17. (생략)

② (생략)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 5의4. (생략)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 16.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양도·양수·보관-----

3.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

5. ~ 5의4. (현행과 같음)

6. 제18조를 -----

-----광고·선전을-----

7. ~ 16.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가중처벌) 제13조의2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 9.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 24. (생 략)

④ (생 략)

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14조제5항-----

2. 제14조제6항-----

2의2. ~ 9.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5항-----

4.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